

지역사회 개발 연구소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지역사회 개발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지역사회 개발 연구소(이하 본 연구소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본 대학교라 함)내에 둔다.

제2조 (목적)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지역사회 개발 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학술연구와 연구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지역사회발전 사업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
- ② 지역사회발전 연구에 대한 교육
- ③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협조 및 지도
- ④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
- ⑤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조직) 연구소에는 소장, 운영위원,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.

제5조 (운영위원) ① 운영위원은 연구원 중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.

② 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제6조 (운영위원회) 연구소의 운영, 연구계획수립, 연구결과의 분석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.

①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동일학과 교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제7조 (소장) ①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소무를 통괄한다.

제8조 (간사) 연구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① 간사는 전임강사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모든 소무를 처리한다.

제9조 (연구원) 연구소에 연구원, 준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둔다.

① 연구원 : 본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

② 준연구원 : 지역사회개발에 공헌이 많은 자와 본 대학교의 교직원

③ 연구보조원 :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본 대학교의 재학생 및 대학원생

④ 초빙연구원 :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

제10조 (임기) 소장, 운영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 정

제11조 (재정)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- ① 대학의 보조금
- ② 외부의 보조금
- ③ 연구원의 회비
- ④ 기타 연구비

제12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 (회계) 회계에 관한 사무는 간사가 정리한다.

제14조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5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7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운영위원은 새마을 연구소 연구위원이 자동 승계 한다.
4. (시행일)이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